

# 「文化史學」지 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文化史學』(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장 원고 집필 규정

제2조(원고작성) 원고의 작성은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1.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요약, 주요단어, 본문, 외국어초록, 외국어 키워드가 순서대로 배열되도록 한다.
2. 원고의 1면에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목차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논문의 언어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도 가능하다.
4. 사진은 흑백이나 컬러로 인화된 원본 사진, 디지털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은 트레이싱지나 디지털 자료 등으로 제출한다.
5. 사진, 그림, 표, 도면 등은 일련 번호를 부여하며, 용어는 국한문으로 써야 한다. 단, 외국어로 된 원고는 예외로 한다.
6. 항목별 대소 구분 번호는 다음 예에 준한다.

I.

1.

(1)

1)

①

7. 인용 주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인명·서명·논문명 등의 부호는 논문은 「」, 저서는 『 』로 표기한다. 그리고 예시와 같이 인용문헌에 대한 출전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원문은 충실하게 옮겨야 한다.

① 저서의 경우는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페이지.)

예) 정영호, 『고고미술의 첫걸음』, 학연문화사, 2000, pp.141~145.

② 논문의 경우는 (필자명, 논문명, 학술지명과 호수, 학회명 또는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페이지.)

예) 정영호, 「백제금동반가사유상의 신례」, 『문화사학』 제3호, 한국문화사학회, 1995. p.33.

8.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별도로 일괄 작성하여 외국어 초록 앞부분에 게재하며, 참고문헌의 순서는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한다.

9. 본문에 인용되는 주 번호는 번호)로 통일하며 문장의 중간에 달거나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반복 인용되는 논저의 경우 곧바로 이어서 인용된 경우 위의 논문, 위의 책, 앞에서 인용된 동일 논저의 경우 앞의 논문, 앞의 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제3장 원고 투고 규정

제3조(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종신회원에 한한다. 단,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종류) 원고의 종류는 창의적으로 작성된 논문, 단보, 서평, 자료 등으로 한다.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가 있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2. 동일 원고를 중복 투고 또는 게재할 수 없다.

제5조(주제) 원고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 문화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6조(심사) 투고된 원고의 심사 여부는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7조(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로 한다. 단, 이를 초과한 경우는 원고의 성격상 부득이하거나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제출) 원고 투고 예정자는 투고된 원고가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 간사, 홈페이지 등에 제출 또는 투고해야 한다.

1. 제출되는 원고는 반드시 원고제목, 필자명, 원고목차, 제출자의 소속, 직위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단어와 요약은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원고 제출 시는 한글이나 워드 등으로 작성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3. 원고에 사진이나 도면이 인용될 시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출된 원고 안에는 원어의 초록과 주요 단어, 원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요 단어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9조(외국어논문)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는 반드시 한글로 된 초록과 주요 단어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마감) 학회지의 원고 투고 마감은 발행 예정일 최소 1~2개월전인 매년 4월말

과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심사료) 편집 및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재정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투고자에게 심사료(100,000원)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료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 심사료를 납부토록 한다.